【 25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7. 4. 24.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개정이유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1996. 7. 1 대통령령15100호)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o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송유관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료를 현행 14단계에서 18단계 세분화(안 제3조)

o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금액을 현행 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함.
(안 제3조의2)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점용료산정기준) 제1항 "[별표1]"중제2호란 및 비고란을 " 별지"와 같이한다.

제3조2 제목중 "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을 "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으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중 "500원" 을 "5천원"으로한다.

제4조제1항의 제1호내지 제2호중 "건설부령"을 각각 " 건설교통부령" 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3호중 "건설부령"을 " 건설교통부령"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제1호중 " 건설부 표준품셈"을 " 건설표준품셈"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명 "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 점용료의 부과징수"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시기는 다음기준에 의한다" 를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로 하며,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의한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분은 허가 하는때에 그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제1항중 "법제18조"를 "법제77조의2"로하고 "건설부령"을"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2 제1항 및 별표 1 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2.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전기통신관 .가스관.송유관.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하수도관 .전기관.전기통신관 .가스관.송유관.송열관	직경 0.1 m 이하	길이1 m	1년	150
		직경 0.1 m 초과 0.2 m 이하			300
		직경 0.2 m 초과 0.4 m 이하			600
		직경 0.4 m 초과 0.6 m 이하			900
		직경 0.6 m 초과 0.8 m 이하			1,200
		직경 0.8 m 초과 1.0 m 이하			1,500
		직경 1.0 m 초과 2.0 m 이하			2,250
		직경 2.0 m 초과 3.0 m 이하			3,750
		직경 3.0 m 초과			5,250
	기타의 관	직경 0.1 m 이하	길이1 m	1년	200
		직경 0.1 m 초과 0.2 m 이하			450
		직경 0.2 m 초과 0.4 m 이하			900
		직경 0.4 m 초과 0.6 m 이하			1,350
		직경 0.6 m 초과 0.8 m 이하			1,800
		직경 0.8 m 초과 1.0 m 이하			2,250
		직경 1.0 m 초과 2.0 m 이하			3,350
		직경 2.0 m 초과 3.0 m 이하			5,600
		직경 3.0 m 초과			7,850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점용물의 길이,표시면적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총점면적,길이,표시면적등이 1㎡ 또는 1m 미만인 경우에는 1㎡ 또는 1m 로 산정한다.

4. " 표시면적" 은 광고탑, 광고판,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5. 단의면적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 →1,900원)

5의 2. 위 표의 점용물중 수도관 · 하수관 · 전기관 · 전기통신관 · 가스관 · 송유관 ·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 전력구 · 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 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6. 위표의 제1호에는 수도,하수도,가스,송유,송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중 관시설이 아닌 용물을 포한다.

7. 위표의 제3에호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위 표의 제6호에는 다른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전주, 전주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이외의 점용물

나.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다.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버스표 판매대,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 이외의 점용물

라.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 일시 점용한 것" 이외의 점용물

마.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 이외의 점용물

9.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2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4를 각각 감액한다.

10.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 2(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의산정액이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감면)① 생략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 하기 위하여설립된법인 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생략) ② (생략) 1-2(생략) 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건설부령이 정하는바 및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생략) 1. 공사용 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3(생략)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및부당이득금의 징수시기는 다음기준에 의한다	제3조의2(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 ---------- ----------5천원---------- --------- ---------- 제4조 (점용료 등의 감면)① (현행과 같음) 1.---------- ---------- --------건설교통부령---------- ---------- ---------- 2.---------- ---------- ---------- ---------- --------건설교통부령---------- ---------- 3.(현행과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 ---------- -----건설교통부령---------- ---------- ③(현행과 같음) ----------건설표준품셈------ ---------- ---------- ---------- 2-3(현행과 같음) 제5조 (점용료의 부과징수)①법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부과징수하고자하는 경우에는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점용기간이1년미만인 경우에는허가를할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삭제).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할 때 그 이후에 연도분은 점용허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삭제)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 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삭제)
(신설)	②제1항에 의한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 징수 한다.
(신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 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②(생략)	③(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징수)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한다. ②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강제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자는 건설부령 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징수)①법제77조의2---------- --- 건설교통부령----------

현 행

별표1

점용료산전기준표(제3조관련)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면적	기간단위	
1.(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 송유관.기타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송열관	직경 0.1 m 이하	길이 1 m	1년	150
		직경 0.1 m 초과 0.2 m 이하			300
		직경 0.2 m 초과 0.4 m 이하			600
		직경 0.4 m 초과 0.6 m 이하			900
		직경 0.6 m 초과 0.8 m 이하			1,200
		직경 0.8 m 초과 1.0 m 이하			1,500
		직경 1.0 m 초과			2,250
		(산설)			
		(산설)			
	기타의 관	직경 0.1 m 이하	길이 1 m	1년	200
		직경 0.1 m 초과 0.2 m 이하			450
		직경 0.2 m 초과 0.4 m 이하			900
		직경 0.4 m 초과 0.6 m 이하			1,350
		직경 0.6 m 초과 0.8 m 이하			1,800
		직경 0.8 m 초과 1.0 m 이하			2,250
		직경 1.0 m 초과			3,350
		(산설)			
		(산설)			
4-10 (생략)	(생 략)				

개 정 (안)

별표1

---			---	---	---
1.(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좌등	좌등	좌등
2.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 송유관.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송열관	직경 0.1 m 이하	길이 1 m	1 년	150
		직경 0.1 m 초과 0.2 m 이하			300
		직경 0.2 m 초과 0.4 m 이하			600
		직경 0.4 m 초과 0.6 m 이하			900
		직경 0.6 m 초과 0.8 m 이하			1,200
		직경 0.8 m 초과 1.0 m 이하			1,500
		직경 1.0 m 초과 2.0 m 이하			2,250
		직경 2.0 m 초과 3.0 m 이하			3,250
		직경 3.0 m 초과			5,250
	기타의 관	직경 0.1 m 이하	길이 1 m	1년	200
		직경 0.1 m 초과 0.2 m 이하			450
		직경 0.2 m 초과 0.4 m 이하			900
		직경 0.4 m 초과 0.6 m 이하			1,350
		직경 0.6 m 초과 0.8 m 이하			1,800
		직경 0.8 m 초과 1.0 m 이하			2,250
		직경 1.0 m 초과 2.0 m 이하			3,350
		직경 2.0 m 초과 3.0 m 이하			5,600
		직경 3.0 m 초과			7,850
4-10(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 비 고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토지의공시지가(지가공시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 ----------
2-4(생략)	2-4(생략)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예:1,445원 → 1,440원, 1,995원 → 1,950원	5. ----------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1,950원 → 1,900원)
(신설)	5의 2. 위 별표1의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어스앙카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6 - 10(생략)	6 - 10. (현행과 같음)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

[1971. 1. 15 조례 제 223호]
개정 1975.12.29 조례 제 437호
개정 1976. 2.18 조례 제 520호
개정 1977.10. 6 조례 제 563호
개정 1982.12. 9 조례 제 873호
개정 1985.12.31 조례 제 1097호
개정 1989. 4.18 조례 제 1260호
전문개정 1994. 4.12 조례 제 1489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 2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 3 조(점용료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회계년도별로 산정한다.

제3조의 2(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 4 조(점용료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

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바 및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점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부당이득금액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 5 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시기는 다음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년도분은 허가할때 그 이후에 년도분은 점용허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 6 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7 조(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

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 8 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9 조(징수의 취임) ①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1. 1.15 조례 제 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12.29 조례 제 4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6. 2.18 조례 제 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10. 6 조례 제 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2. 9 조례 제 8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5.12.31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18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12 조례 제14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료(제3조 관련)

(금액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면적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 주		1개	1년	600
	전주와 유사한 것				900
	공 중 전 화				24,100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의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 및 통신시설관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150
		직경 0.1m초과 0.2m이하			3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600
		직경 0.4m초과 0.6m이하			90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200
		직경 0.8m초과 1.0m이하			1,500
		직경 1m초과			3,000
	기타외 관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2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450
		직경 0.2m초과 0.4m이하			900
		직경 0.4m초과 0.6m이하			1,3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800
		직경 0.8m초과 1.0m이하			2,250
		직경 1m초과			4,50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면적	기간단위	
3. 광고탑, 광고판, 간판,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	일시 설치한것 (1월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00
		기 타	〃	1년	15,000
	사 설 안 내 표 시		1개	1년	12,50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일시설치한것	점용면적 1㎡	1일	50
		기 타 의 용 도			100
	아 취	도 로 횡 단	표시면적 1㎡	1년	30,000
		기 타			15,00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곱한금액
	진 입 로				토지가격에 0.025를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2년	토지가격에 0.015를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곱한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0.007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면적	기간단위	
7. 노점, 자 동 판 매 기, 상 품 진 열 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대기 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 기타	일시 점용한것	점용면적 1㎡	1일	10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5를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 길이, 표시면적등이 1㎡ 또는 1m미만인 경우에는 1㎡ 또는 1m로 산정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부분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부과한다.
   (기간단위로 1년인 경우의 예 : 1,445원 → 1,400원, 1,995원 → 1,950원)

6. 위표의 제1호에는 수도, 하수도, 가스, 송유, 송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중 관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한다.
7. 위 표의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위 표의 제6호에는 다른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전주, 전주와 유사한것, 공중전화"이외의 점용물
   나.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다.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이외의 점용물
   라.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일시 점용한것"이외의 점용물
   마.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이외의 점용물
9.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10.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잇다.

[별표 2]

점 용 료 조 정 산 식 (제7조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10%이상 20%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이상 50%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이상 100%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이상 200%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이상 500%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 이상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0}]

대한민국정부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장

관보

제13350호 1996. 7. 1. (월)

대통령령

○대통령령제15,100호(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 ……6
○대통령령제15,101호(일반국도노선지정령중개정령)……15
○대통령령제15,102호(고속국도노선지정령중개정령)……33
○대통령령제15,103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36
○대통령령제15,104호(기부금품모집금지법시행령개정령)……39
－대통령령제15,104호부칙에의하여폐지되는대통령령
: 기부심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제15,105호(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48
○대통령령제15,106호(자연공원법시행령중개정령)……53
○대통령령제15,107호(온천법시행령개정령)……57
○대통령령제15,108호(용역경비업법시행령개정령)……61
○대통령령제15,109호(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72
○대통령령제15,110호(염관리법시행령개정령)……78
○대통령령제15,111호(염업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85
○대통령령제15,112호(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86

총리령

○총리령제576호(관세청직원복제중개정령) ……87
○총리령제577호(신용관리기금법시행규칙개정령) ……95
○총리령제578호(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제7조에의한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중개정령) ……99

부령

○내무부령제684호(풍수해대책법시행규칙개정령) ……100

(이면 계속)

회람								

발행처무처 (편집 ☎720－4331 보급 ☎727－0611 서울종로구 세종로 77－6 ㉮110－760)

1201－4A 1995.10.12. 승인
190×268 신문용지 46.8g/㎡

별표 2의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직경 0.1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850	550	150
		직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1,750	1,150	300
		직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3,500	2,300	600
		직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5,250	3,500	900
		직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7,000	4,650	1,200
		직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8,750	5,850	1,500
		직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13,100	8,750	2,250
		직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21,850	14,600	3,750
		직경 3.0미터초과			30,600	20,450	5,250
	기타의 관	직경 0.1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1,300	850	200
		직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2,600	1,750	450
		직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5,200	3,500	900
		직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7,850	5,250	1,350
		직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10,450	7,000	1,800
		직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3,100	8,750	2,250
		직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19,650	13,100	3,350
		직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32,750	21,850	5,600
		직경 3.0미터초과			45,850	30,600	7,850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동란 제2호중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동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의3.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대책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신청중이거나 굴착공사를 시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관리심의회

道路法	施行令	施行規則
의 保存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道路의 占用에 關한 工事를 施行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는 管理廳은 그 工事의 內容과 時期를 道路占用者에게 미리 通知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道路의 占用에 關한 工事는 이를 道路工事로 본다.	1項과 제2項의 규정은 법 제42조제1項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의 대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71·8·5)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점용공사 대행통지는 제29호 서식에 의하되, 예산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第43條(占用料의 徵收) ①管理廳은 第40條의 規定에 依하여 道路를 占用하는 者로부터 占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의 算定基準등 占用料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道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기타의 道路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道路의 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改正 93·3·10) ③削除(70·8·10)	제26조의2(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3조제1項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법 제43조제2項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3·8·14〕 제26조의3(점용료의 부과·징수) ①관리청은 법 제43조제1項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項의 규정에 위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1. 사업자의 주소와 성명

2. 사업의 종목

3. 취소 또는 정지를 요청하는 이유

4. 기타 증빙서류 및 참고사항

제26조의3제3항중 "500원"을 "5천원"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7호중 "공업단지조성사업"을 "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29조의5 내지 제29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5(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등) ①관리청이 법 제54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적치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물등의 보관장소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법 제54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적치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리청의 게시판에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적치물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적치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치물등을 버려두는 경우 당아 없어지거나 빈질 또는 파괴등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적치물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9조의6(적치물등의 반환등) ①관리청이 보관한 적치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적치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의7(미반환적치물등의 귀속)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그 적치물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적치물등은 국고에 귀속한다.